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0
----------	-------

발의연월일 : 2019. 3. 13.

발의자 : 송영길 · 박찬대 · 유동수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조배숙 · 윤관석 · 원혜영  
유승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라목 신설).
- 나.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교원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3호).
- 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14조”를 “「고등교육법」 제14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 ①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외국학교법인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제2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외국학교

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 부 칙

i)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p> <p>가. ~ 다.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p> <p>3. ----- .</p> <p>----- .</p> <p>----- 「고등교육법」 제14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p>
<p>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p>	

<신 설>

제25조의2(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 ①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외국학교법인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제2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